

08 나의 임금,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예시)

예시 시간급인 경우 TIME

- 1시간에 7,000원의 시간급을 받는 경우

$$\frac{\text{시간급 } 7,000 \text{ 원}}{\text{최저임금 위반}} < 7,530 \text{ 원}$$

(설명)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예시 일급인 경우 DAY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56,000원을 받는 경우

$$\frac{56,000 \text{ 원}}{\div 8 \text{ 시간}} = 7,000 \text{ 원} < 7,530 \text{ 원}$$

(설명) 56,000원 ÷ 8시간 = 7,000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예시 주급인 경우 WEEK

-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168,000원을 받는 경우

$$\frac{168,000 \text{ 원}}{\div 24 \text{ 시간}} = 7,000 \text{ 원} < 7,530 \text{ 원}$$

(설명) 168,000원 ÷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7,000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예시 월급인 경우 MONTH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463,000원을 받는 경우

$$\frac{1,463,000 \text{ 원}}{\div 209 \text{ 시간}} = 7,000 \text{ 원} < 7,530 \text{ 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582,000원을 받는 경우

$$\frac{1,582,000 \text{ 원}}{\div 226 \text{ 시간}} = 7,000 \text{ 원} < 7,530 \text{ 원}$$

※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26시간

+ 플러스* 정보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예요.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02)2231-0009 | 서울남부지청 | 02)2639-2100 |
| 서울강남지청 | 02)584-0009 | 서울북부지청 | 02)950-9880 |
| 서울동부지청 | 02)403-0009 | 서울관악지청 | 02)3281-0009 |
| 서울서부지청 | 02)713-0009 |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032)460-4545 | 안산지청 | 031)486-0009 |
| 인천북부지청 | 032)540-7910 | 평택지청 | 031)646-1114 |
| 부천시청 | 032)714-8700 | 강원지청 | 033)269-3551 |
| 의정부지청 | 031)877-0009 | 강릉지청 | 033)650-2500 |
| 고양지청 | 031)931-2800 | 원주지청 | 033)769-0800 |
| 경기지청 | 031)259-0204 | 태백지청 | 033)552-0009 |
| 성남지청 | 031)788-1505 | 영월출장소 | 033)374-0009 |
| 안양지청 | 031)463-7300 | |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 |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051)853-0009 | 울산지청 | 052)272-0009 |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88 | 양산지청 | 055)387-0009 |
| 부산북부지청 | 051)309-1500 | 진주지청 | 055)752-0009 |
| 창원지청 | 055)239-6500 | 통영지청 | 055)645-0009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 |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053)667-6200 | 구미지청 | 054)450-3500 |
| 대구서부지청 | 053)605-9000 | 영주지청 | 054)639-1111 |
| 포항지청 | 054)271-6700 | 안동지청 | 054)851-8000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 |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 062)975-6200 (064-728-6100) | 군산지청 | 063)452-0009 |
| 전주지청 | 063)240-3400 | 목포지청 | 061)280-0100 |
| 익산지청 | 063)839-0008 | 여수지청 | 061)650-0108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042)480-6290 | 충주지청 | 043)840-4000 |
| 청주지청 | 043)299-1114 | 보령지청 | 041)930-6139 |
| 천안지청 | 041)560-2800 | | |



일급으로 환산시 **60,240원**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시간급 7,530원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18.3.20.시행))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자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 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 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 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06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7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 월급 1,685,000원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쉽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만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①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봅니다.

| 월급 명세서(2018년 2월)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
| 기본급 | 1,450,000원 | 기본급 | 1,450,000원 |
| 설 상여금 | 50,000원 | 직무수당 | 50,000원 |
| 직무수당 | 65,000원 | | |
| 시간외수당 | 100,000원 | | |
| 가족수당 | 20,000원 | | |
| 급여 계 1,685,000원 | | 임금 계 1,500,000원 | |

②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 시간당 임금 환산 방법 :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
-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휴 8시간)×7×365) ÷ 12월

③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과 비교하여 판단 합니다.

| | |
|-------------|----------|
| 1,500,000 원 | < 7,530원 |
| ÷ 209 시간 | |
| 7,177 원 | |

최저임금 위반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